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공지능 이용 콘텐츠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48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5. 31.

다. 회 부 일: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발전속도와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된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콘텐츠제작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④ 제3항에 따른 표시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u> (생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

2. 검토의견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발달과 ‘생성형 AI’¹⁾ 등의 등장에 따라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AI 콘텐츠’ 또한 인간이 창작한 콘텐츠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고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콘텐츠산업의 외연 확장 및 산업 고도화 등의 측면에서는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deep fake)’ 기술 등을 이용하여 생성된 ‘가짜뉴스’ 등 콘텐츠로 인해 이용자가 허위 사실에 따른 피해를 보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²⁾

콘텐츠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현행법 제26조제1항³⁾은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콘텐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교육,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시행 등 사업

1)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소설·시·이미지·비디오·코딩 등의 콘텐츠를 스스로 생성해 내는 기술로, 향후 각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2) YTN, ““딥페이크 음란물, 최근 3년 4배 폭증”...SNS ‘프사’를 노린다”, 2024. 6. 12., 조선일보, “딥페이크의 공습...전쟁 여론·대선구도까지 바꾼다”, 2024. 6. 16. 등

3)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 정부는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2. 제28조에 따른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3.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
4.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이를 악용해 제작된 콘텐츠로 인한 피해 등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의 이용자 보호 규정에 더하여 인공지능 이용 콘텐츠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콘텐츠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아울러, 미국의 경우 백악관의 주도로 2023년 7월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I 관련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에 워터마크(watermark)⁴⁾를 삽입하는 등 자발적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유럽의 경우 EU가 2024년 3월 이른바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여 AI 시스템 제공자가 딥페이크와 같이 실제 콘텐츠와 유사한 이미지·오디오·비디오 콘텐츠 등을 생성 또는 조작할 경우 해당 콘텐츠가 AI로 만든 생성물임을 공개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규제⁵⁾ 등을 신설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와 관련한 국내 입법례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공

4) 특정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미지·오디오·비디오 파일 등에 삽입된 패턴 등을 의미함.

5) EU, 「Artificial Act」, Article 52(3)

직선거법」 제82조의8⁶⁾이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⁷⁾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 입법례도 참고할 수 있겠음.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인공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⁸⁾ 인공지능 이용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 부과 여부 또한 관련 법률안의 논의 경과를 고려하여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바,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 6)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8)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2024.5.31.,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2024.6.17.,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6.20.,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등 여러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의 표시의무 부과는 AI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포함한 콘텐츠제작자를 규제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AI 관련 기본법 등을 먼저 제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이 AI 기술 및 콘텐츠 유형 등 핵심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수범자가 규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으며 AI 콘텐츠의 제작뿐 아니라 유통·확산 과정에서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⁹⁾

한편, 개정안에 따라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먼저,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이나 종류¹⁰⁾뿐만 아니라 표시의 내용과 방법까지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표시의무의 구체적인 범위 대한 예측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 및 표시의 내용·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및 향후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수준·방법 및 그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분석과 규제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봄.

9) 기타 관련 협회 및 민간업계 등 의견은 참고자료 참조

10) 참고로, 대표적인 인공지능(AI) 기술로는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 기계학습(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인공신경망·딥러닝(Artificial Neuron Network, Deep Learning)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주목받고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인공지능 이용 콘텐츠에 대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표시의무 부과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 수단에 대한 추가적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

타 부처 및 협회 · 민간업계 등 의견

○ 타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24.6.18)	• 최근 생성형 AI의 성능 발전에 따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에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표시하도록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美·EU 등은 이를 각 국의 규범에 반영한 바 있음. - 이는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결과물이 미칠 잠재적 피해에 대하여 AI 사업자의 사전 기술적 조치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 AI가 가진 즉시성, 연결성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의 “표시의무 부과”는 AI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포함한 콘텐츠제작자를 규제하는 사항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는 AI에 대한 단순한 포괄적 규제가 아닌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는 규율 체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AI 기본법안 제정 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방송통신 위원회 (2023.6.19)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표시를 해야 하는 인공지능 기술 또는 콘텐츠의 유형 등 핵심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모두 위임하여, - 수범자가 규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소한 수정이나 오해의 가능성이 없는 콘텐츠(미용목적, 애니메이션 등)까지 과도하게 규제될 우려 존재 - 개정안에 AI에 대한 정의가 없고 AI으로 만든 콘텐츠의 범위가 모호하여 수범자가 규제대상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움. 따라서 ‘AI’ 및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 AI 기술 및 콘텐츠 유형, 표시 내용과 방법 등 핵심 사항들을 모두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규제 예측성이 낮고 과도한 포괄입법의 우려가 있음 ※ 시행령 위임 시 과기부·방통위 등 AI 소관 부처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나, 관련 근거 등이 부재함 • 또한, AI콘텐츠의 ‘제작’뿐만 아니라 ‘유통·확산’ 과정에서의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 주요내용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2023.12.11)	•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속도 및 파급력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권리자 보호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며, 그 방향성과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 생성에 대하여 기본적인 규제나 가이드가 없다면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없으며, 기존 저작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향후 창작자들의 창작의욕을 저하시켜 콘텐츠산업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이러한 제도의 공백에서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콘텐츠 여부의 표기 의무화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며, 향후 권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 •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의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여 오히려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음 -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임을 표기하는데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며, 간단한 기술의 적용으로 생성 단계에서 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공지능 생성물임이 정확히 표기된다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함에 따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 부담 및 법적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어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이용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음 •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의 정확한 징수 및 분배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의 구별이 필수적임 - 현행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탁관리 대상이 아니며,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음 - 따라서, 현행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 따라 신탁관리업자가 정확한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여부의 구별이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 생성물 여부에 대해 콘텐츠제작자 등이 표기하지 않는 이상 이를 기술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인공지능 생성 여부 및 활용(기여도) 등에 대해 속이고 저작권사용료를 부당하게 분배받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불특정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음 • 콘텐츠 제작자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며, 이미 저작권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과 피해의 추가 확산 방지가 시급함

	- 일부 방송사 등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입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기보다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AI의 활용 형태 및 콘텐츠 제작의 주체 또한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생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없이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뿐임 - 국내 저작권 업계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생성물 여부 미표기로 인한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작곡 AI인 이봄(EVOM) 사례와 같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생성물 여부를 허위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더 큰 피해가 누적되고 추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해야 함 - 또한, 인공지능의 학습에 기존 저작물이 사용되는 만큼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딥보이스, 딥페이크, AI 커버곡, 선거 등과 관련한 가짜뉴스와 같은 파생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인공지능 콘텐츠 여부의 표기가 선행되어야 함 -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빠르게 배포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에의 악용 가능성, 명예훼손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표기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따라갈 필요성 - 한국은 글로벌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임에도 인공지능과 관련한 권리자 보호에 관해서는 아직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는 입법 및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이미 인공지능 콘텐츠 표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입법이 필요함
방송협회 (2024.6.10~17.)	•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모호함.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통상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이르며, 현재 데이터·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과 접목되어 산업·제품·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인공지능 윤리 문제,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우려도 있기에, 해당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됨. -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은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본 개정안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표시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자의적 해석에서 비롯된 혼선을 야기함. • 콘텐츠 제작 방식 및 기여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마땅함.

	- 본 개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을 통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양산 및 배포될 것을 우려하여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사용자에게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의도 및 범위가 다르며, 특히 영상콘텐츠의 경우 수많은 제작 요소가 활용되는 만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음. - 방송콘텐츠의 경우, 대본·실연자·이미지·음악·자막 등 여러 요소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한 만큼, 생성형 AI가 100%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도구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분리 등 AI를 활용하는 콘텐츠 산업 실정에 맞게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며, 명확한 정의 없는 선부른 규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제정 취지와는 정반대로 산업 생산성을 저해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

○ 민간업계 의견

방송사명	의견 주요내용
TV조선 (2024.6.10~17.)	• 법안 발의 사유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영상, 음성 등에 대한 진위를 사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부작용 사례는 아직 대두된바 없으며, 인공지능을 통한 콘텐츠 제작 시장의 규모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공지능 콘텐츠에 대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규제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며, 인공지능을 통한 제작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신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독려 및 규제 완화의 정책 기조와 달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기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불명확성도 존재함. 전체 콘텐츠 중 극히 일부분에 이용된 인공지능 기술을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로 보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함 • 현재는 법 또는 시행령 조항 신설을 통해 강제적으로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보다 사업자 자율적으로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콘텐츠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경우,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 조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채널A (2024.6.10~17.)	• 채널A는 정확하고 신중한 자세로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시청자들에게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그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방송사가 이미 방송법, 방송심의를 통해 '성실한 출처 명시'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은 추가적인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출처명시)는 방송사는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제34조(표절금지) 등의 조항도 방송 내용에서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전달,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안된다', '국내외 다른 작품을 표절하면 안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명시를 강조하는 조항들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들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 법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같은 강력한 규제가 가능합니다. • 이처럼 현재 방송사가 이미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들의 부담을 키우는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에이는 자체적으로 '기자 윤리 규칙', '제작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 준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출처 명시에 대한 세부 조항을 마련하여 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 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방송제작과 보도의 자유는 방송에 있어 중요한 가치로서, 관련 규제와 권고 기준 마련 등은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기존 법 규정으로도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고, 방송사들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MBN (2024.6.10~17.)	• 특정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방송사는 이미 자체적으로 AI를 활용할 경우 해당 내용을 표기하는 방안으로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미 방송 콘텐츠는 방송심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해 사업자들의 극심한 혼선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각 방송사업자별로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는 방안을 포함하여 본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JTBC (2024.6.10~17.)	•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에 따른 미디어 산업 내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한 본 법률개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법안의 문구 및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 등을 감안했을 때 본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규제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이 불명확함 - 현행법 상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의 범주는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 법안은 본질적으로 불명확성을 안고 있으므로, 규제대상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선제적으로 정립된 후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본 조 4항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함 - 법률이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더라도 중대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규제하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규제의 본질인 '표시내용 및 방법'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는 헌법상 원칙에 반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